작은도서관 조성 지원(전환사업)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균형발전특별회계		
사업기간	☑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공사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자료구입비 지원		
사업비 (당해년도)	98,000천원	〔국비〕	〔시비〕98,000천원
	기타 (예산 외) 〔구비〕		〔기타〕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문화본부	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	오지은 2133-0200	김지안 2133-0220	김태인 2133-0227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 산 설 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2예산액 (A)	2023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0	(x-) 98,000	(x-) 98,000	(x-) 100
자치단체자본보조	(x-) 0	(x-) 98,000	(x-) 98,000	(x-) 100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3년 예산내역		
자치단체자본보조	○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	=	98,000천원

과목구분	2023년 예산내역		
	- '22년도 구로구 교부잔액 50,000,000원*1개소	=	50,000천원
	- '22년도 중구 교부잔액 48,000,000원*1개소	=	48,000천원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
○ 작은도서관 조성비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권 및 문화 향유권 보장

□ 사업근거

○ 법령근거

- 도서관법
  - 제4조(국가 및 자방자치단체의 책무)
  - 제29조(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등)
  - 제32조(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등)
- 작은도서관 진흥법
  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  - 제5조(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)
-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
  - 제26조(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지원)

□ 사업내용

○ 사업기간 : 2023년 1월 ~ 12월

○ 지원대상 : 25개 자치구

○ 사업수행주체 : 25개 자치구

○ 추진방법 : 자치구별 조성비 지원을 통한 자치구 직접 수행

○ 사업의 주요내용

- 작은도서관 조성(리모델링 포함)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지원

□ 추진경위

○ ~2021년 :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(국비)

○ 2022년: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지원(균형발전특별회계)

□ 2023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98,000	
기본계획 수립	2023.01~2023.02		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계획 수립
보조금 교부	2023.03~2023.03	98,000	자치구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
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	2024.01~2024.02		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

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20년도	○ 3개 자치구 작은도서관 5개소 조성 지원(국비지원)
2021년도	○ 3개 자치구 작은도서관 3개소 조성 지원(국비지원)
2022년도	○ 6개 자치구 작은도서관 8개소 조성 지원(균특지원)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작은도서관 조성의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 효과

○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작은도서관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, 예산 절감 효과 증대